

「전기이륜차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플랫폼 구축」 3차년도 수혜기업 모집 공고

전기이륜차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관련 기업 역량강화를 위하여 「전기이륜차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플랫폼 구축 사업」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11월 29일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목적

- 전기이륜차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핵심부품 시제품제작 기업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 전기 이륜차 공유스테이션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및 기술 고도화를 통한 산업 활성화 유도

2. 지원기관 및 문의처

지원기관명	지원분야	담당자	문의처
(재)경북테크노파크 (미래차첨단소재성형가공센터)	· 시제품 제작	서은솔 연구원	eunsol5757@gbtp.or.kr 054-750-3711

3. 신청 및 접수

- 신청 방법 :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 신청서 다운로드 : (재)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btp.or.kr)→사업공고
- 공고 기간 : 2024년 12월 2일 ~ 2024년 12월 11일 18:00까지
- 접수 기간 : 2024년 12월 2일 ~ 2024년 12월 11일 18:00까지

4. 지원 내용

- 지원 프로그램

지원프로그램	지원내용	지원건수 (건)	최대지원금액 (천원)	지원기관	비고
시제품 제작	- 전기 이륜차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시제품 제작 지원	5	20,000	(재)경북 테크노파크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의 10% 이상 (부가세 별도)

○ 지원방식

- 수혜기업 선정 후 간접지원(지원기관 →공급기관(업)으로 사업비 입금)의 방법으로 지원
- 수혜기업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되며, 적절한 지원 대상기업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 과제 접수 및 평가 일정, 지원규모 등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및 자격

- 전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등)으로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관련 시제품 제작 가능 기업
- ※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범위 : 탈부착 커넥터, 통신 부품, 배터리팩, 충전기 등
- ※ 그 외 평가위원회에서 전기이륜차배터리 공유스테이션 관련 업종으로 인정할 경우 지원 가능
- ※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 소재지가 경주인 경우 가산점 3점 부여

○ 사전제외 대상

- ①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기업
- ③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
- ④ 기업의 부도
- ⑤ 국세·지방세 등 채납처분을 받은 경우
 -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⑥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로 함.
- ⑦ 신청서, 사업계획서, 동의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수혜기업으로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를 취할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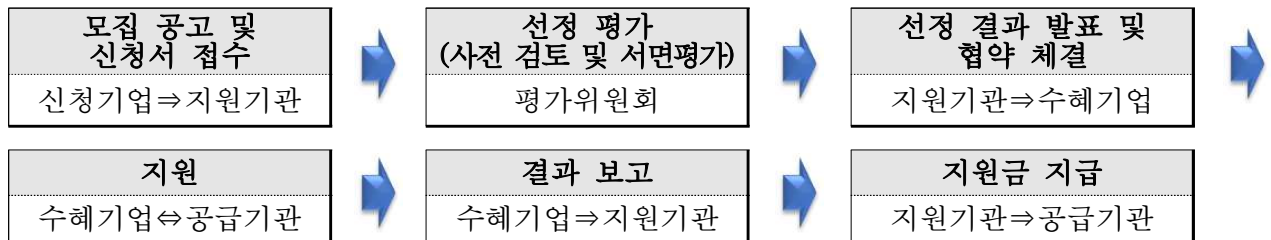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목록
필수	① 지원신청서(양식1) ② 사업계획서(양식2) * 중복지원금지사항확약서(양식3),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양식4),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④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본) 원본 각 1부 ⑤ 2021년, 2022년, 202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⑥ 고용현황 관련 증빙자료 *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혹은 '사업장자격취득자명부(고용보험)' 해당년도 10월 31일 기준, ⑦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견적서
해당시	⑧ 공장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본사는 경주지역 외에 소재하고 있으나 공장 소재지가 경주지역내에 해당하는 경우

5.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 → 면담/현장실태조사(선택) → 선정평가(필수)
- (평가기준) 사전검토, 면담/현장실태조사 및 선정평가를 진행하며, 선정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수혜기업으로 선정

6. 추진일정



7. 유의사항

- 지원금액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지원금 지급은 사업완료(결과 보고서 제출)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지원기관의 집행 절차에 따라 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 신청기업의 단순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 중단 시 차회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제출서류가 허위, 중복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 중복지원은 본 사업을 포함한 최근 2년 이내 동일 제품에 대한 유사 지원 여부로 판단함.
- 사업 수행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개월까지로 함.